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상풍력발전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녹색해운항로 구축·운영과 해사 분야 탈탄소 국가전략 수립 및 체계적 이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 4천톤급 해양조사선을 대체 건조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9급 2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내 안전·보건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 및 새만금항 신항 개장에 따라 부두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에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는 한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2명(8급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8.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4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의2.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수산업 등의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제5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⑦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608”을 “6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04”를 “60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87”을 “589”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040”을 “3,054”로 하고, 일반직 계 “2,929”를 “2,9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906”을 “2,920”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5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7. 제55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중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2명(8급 2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2일까지는 별

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3의2]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0000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총계	3,056
교육공무원 계	111
교장	2
교감	2
교사	107
일반직 계	2,945
고위공무원단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9
3급 또는 4급 이하	2,922
전문직공무원	6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행안
제10조(해양정책실) ①·② (생략)	제10조(해양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46. (생략)	1. ~ 46. (현행과 같음)
<신설>	46의2. <u>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수산업 등의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u>
47. ~ 87. (생략)	47. ~ 87. (현행과 같음)
제55조(한시정원) ① ~ ⑤ (생략)	제55조(한시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u>해양생태계 보전·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u>
<신설>	⑦ <u>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u>

	<u>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u> <u>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u> <u>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08</u>	<u>610</u>	+2
·	·	·	
·	·	·	
일반직 계	<u>604</u>	<u>606</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87</u>	<u>589</u>	+2
·	·	·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040</u>	<u>3,054</u>	+14
·	·	·	
·	·	·	
일반직 계	<u>2,929</u>	<u>2,943</u>	+1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906</u>	<u>2,920</u>	+1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2